

제 256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4.6.)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중 호]

목 차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4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6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7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8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범위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형식에 맞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전 조문)
(현행) 예산편성 과정 ⇒ (변경)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정함(안 제6조)

1)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2)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마. 법령 위임범위 및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대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구성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8조~제18조)

1) 위원 수 확대 : 15명 ⇒ 30명

2) 위촉 위원 연임

3) 위촉 위원 공개모집 절차 구체화

4)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안 제18조)

(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기능대행

(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거창읍은 한시적으로 지역회의 구성

(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의결

바. 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을 정함(안 제19조)

사.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을 정함(안 제21조)

1)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있는 자

2)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따로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재정법」 제39조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1,4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2. 10. ~ 3.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실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나. 또한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요사업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으로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지방 행정 환경에 대응하며 주민중심의 자치구현을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위원회 수당 :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나. 예산학교 운영 :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 다. 공로자 포상 :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근거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내용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 위원회 수당, 포상금 등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위원회 수당 : 2021년도 예산 1,40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과정의"를 "등 예산과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정에"를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절차"를 "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0호, 2020. 3.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의 항목을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활성화 정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6조의 제목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공청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문조사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예산편성시"를 "예산과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제5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읍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3. 읍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군의회 의원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 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60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사업장,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별로 예비위원을 5명 이내로 함께 위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현행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설명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보건소 분과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안 제10조)
- 나. 정원의 총수 증원 11명 : 767명 ⇒ 778명(안 제25조)
집행기관의 정원 : 증11명(753명 ⇒ 764명)
-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4급 정원 : 증1명(3명 ⇒ 4명)

2) 일반직 4~5급 정원 : 감1명(2명⇒1명)

3) 일반직 5급 정원 : 증1명(37명⇒38명)

4)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9명

가) 현행 : 690명(본청323, 의회11, 직속기관118, 사업소37, 읍41, 면160)

나) 변경 :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5) 연구직(연구사) 정원 : 증1명

가) 현행 : 5명(본청2, 직속기관2, 사업소1)

나) 변경 :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38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1회 추경예산 513,000천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2. ~ 3.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주민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및 주민생활과 밀착된 원스톱 보건복지에 대한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보건소 조직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고
- 나. 소지역단위 읍면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민생활현장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인력을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증원 11명

나. 관련조문 : 제2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 비	513	513	513	513	513	2,565

3. 관련 의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시책 및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1년 인건비 : 513,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청년의 긍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네트워드를 신설하고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함(안 제명, 제6조·제9조)
- 나. 청년네트워크 신설(안 제13조의2)
 - 1) 기능 :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다. 청년시설 위탁 근거 신설,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19조)
- 라.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청년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5백만원 확보, 1억6천만원 추경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3. 2. ~ 3.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6조·제8조·제13조의2)

5. 검토의견

가. 청년의 긍정참여기회 방법의 다양화와 청년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에 거주·생활하는 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나. 제명 및 위원회 명칭변경과 청년네트워크 신설, 청년 시설 및 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청년네트워크 활동 경비 지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 연도 (2021년)	2차 연도 (2022년)	3차 연도 (2023년)	4차 연도 (2024년)	5차 연도 (2025년)	합계
군비	165	55	55	55	55	38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 5백만원

나. 청년 역량강화 지원 : 160백만원

1) 청년 언택트 마케팅 지원 : 100백만원

2) 청년 동아리 지원 : 10백만원

3)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 지원 : 50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임 양 희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정함(안 제2조)
- 나.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다.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광고 게재 시 비용부담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라. 주소정보 생활화 사업을 정함(안 제5조)
-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1조)
 - 1) 위원회 명칭 변경 :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바.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정함(안 제12조)
- 사.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을 정함(안 제13조)
- 아. 업무의 위탁근거를 정함(안 제14조)
- 자. 토지 등의 출입증을 정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31조
-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118백만원 확보(예산추가 요인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3. 4. ~ 3. 24.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2007. 4. 5 시행된 도로명주소체계는 보다 안정화·고도화되어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세밀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 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21.6.9.)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현행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7.1.25.)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삭제 2010.5.6>

제3조 (도로명의 변경 요건)<삭제 2010.5.6>

제4조 (도로명의 변경)<삭제 2010.5.6>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삭제 2010.5.6>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개정 2010.5.6>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삭제 2010.5.6>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삭제 2010.5.6>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수가 고시하되, 제작 비용의 산정은 군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원인자 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 4 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삭제 2010.5.6>

제 9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삭제 2010.5.6>

제 10조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삭제 2010.5.6>

제 5 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삭제 2010.5.6>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삭제 2010.5.6>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7.1.25.>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개정 2010.5.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와 훼손될 것 같거나 없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삭제 2010.5.6>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산하기관, 군내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9 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24조(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0.5.6>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0.5.6>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5.6>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0.5.6>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삭제 2010.5.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도로명주소의 고지

제32조(실비변상) 군수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경감률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체납 군세에 대한 가산금 면제를 신설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경감 확대(안 제9조의2·별표)
 - 1) 경감기한 연장 : 2020. 12. 31. ⇒ 2021. 12. 31.
 - 2) 경감률 확대 : 9단계(10%~50%) ⇒ 14단계(10%~75%)
- 나. 소상공인의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의3)

1)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면제세목 : 2020년 이후 부과한 군세에 대한 가산금·증가산금

3) 면제제외 : 3회 이상 군세 체납자

다.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 정비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 삭제
(안 제3조)

2) 일몰도래 감면 연장(안 제5조·제7조·제9조)

가) 대상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
장현대화사업

나) 연장 : 2021. 12. 31. ⇒ 2023. 12. 3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입법예고(「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가) 예고기간 : 2021. 3. 11. ~ 3.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재산세 경감 기한 연장 및 경감률을 확대하고
- 나. 소상공인의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생략)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 시행)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 1) 균등분 ⇒ 개인분(안 제6조)
 - 2) 재산분 ⇒ 사업소분(안 제7조)
- 나. 주민세 세율을 정함
 - 1)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정함(안 제6조)
 -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함(안 제7조)

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정함(안 제8조)

1) 신고대상 :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물 신축·증축 등

2)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

라.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안 제2조~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장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11. ~ 3. 2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지방세법」 개정(시행 2021. 1. 1.)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4.~8. (생략)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원사업 변경(안 제7조)
 - 1) (현행) 종량제봉투 수수료 면제
 - 2) (변경) 종량제봉투 지원
- 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안 제10조)
 - 1) 보훈명예수당 : 월 3만원 ⇒ 월 7만원
 -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50만원
- 다. 법령 재기재·위배소지 등 정비(안 제10조·제15조·제17조)
 - 1) 군수의 예산편성권 침해소지 정비 : 지급한다 ⇒ 지급할 수 있다
 - 2) 법령 위임없는 권리제한 및 법령 재기재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392백만원 확보(322백만원 추가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 가) 예고기간 : 2021. 3. 11. ~ 3.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5. 검토의견

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는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나. 이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변경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증액과
종량제봉투 예산 지원

나. 관련 조 문: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714	714	714	714	714	3,570

3. 관련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지급과 종량제
봉투 예산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672,000천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5,000천원
3. 종량제봉투 지원 : 17,000천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⑥ (생략)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8 삭제 <2021. 1. 12.> [시행일 : 2021. 7. 13.] 제32조의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생략)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칙 <제17892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략~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2-0264

~생략~

먼저,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17. 의견11-0139 회신례, 법제처 2012. 7. 4. 의견 12-0226 회신례 참조).

다음으로,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만 65세 미만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례 참조),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국의 모든 참전유공자가 반드시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국가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참전유공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지원대상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생략)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 6. 9. 시행)으로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따라 법령 재기재 등 정비(안 제1조·제2조)
 - 1) 목적 :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함
 - 2) 정의 : 위임조례이므로 상위법령 정의규정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삭제

나.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신설함(안 제9조~제15조)

1) 구성

가) 위원장 군수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

나) 당연직 위원 :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

다) 위촉직 위원 :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과장,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49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2. 18. ~ 3.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반드시 설치하는 강행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1. 6. 9.)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군수와 체육회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 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띠고 있어, 법률해석 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범위에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시설업협회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

~이하생략~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